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6. 30.(목)	
담당 부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정원희 (044-202-8402)
		담당자	주무관	이해웅 (044-202-8406)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 속개하였다.

* 제8차 전원회의: 6.29.(수) 00:49 개최 후 01:41 정회

□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제3차 제시안 (제2차 수정안)	시간급 10,090원 (전년 대비 10.1% 인상)	시간급 9,310원 (전년 대비 1.6% 인상)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	시간급 10,080원 (전년 대비 10.0% 인상)	시간급 9,330원 (전년 대비 1.86% 인상)

□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구분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6% 인상)
하한선	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7% 인상)

□ 공익위원회는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 법정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노·사 각각 1/3 이상 출석

**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기권 처리

- 이는 '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0,580원으로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

○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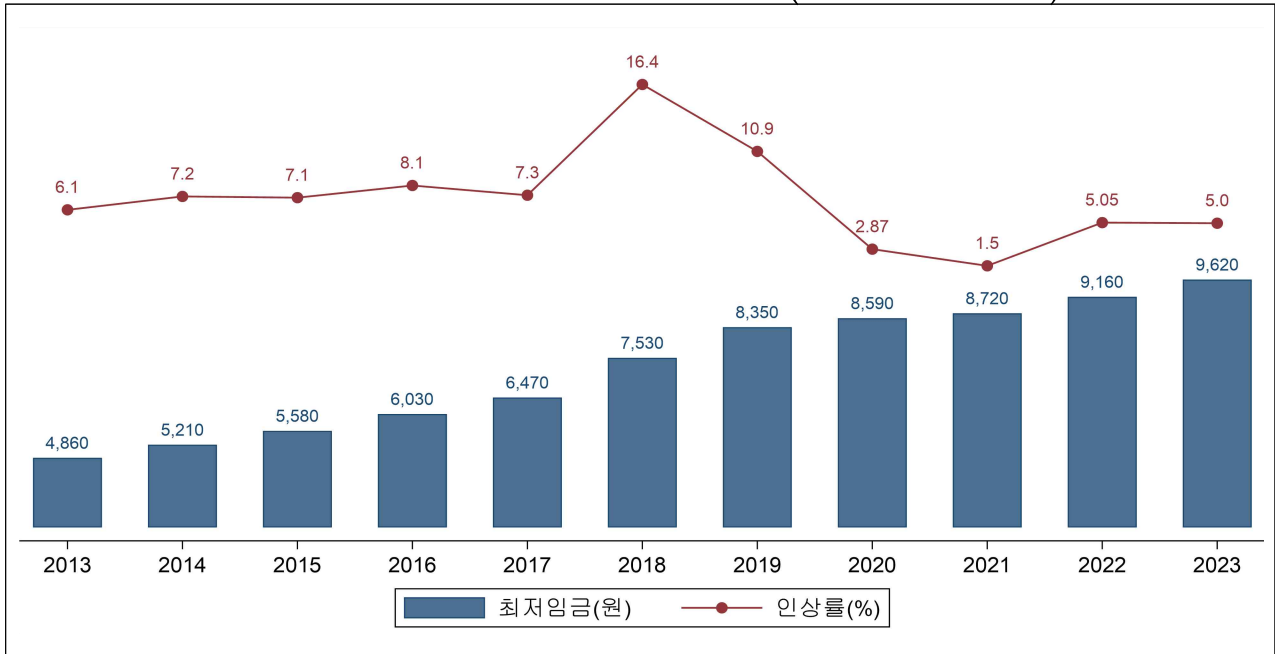
* 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활용

구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기획재정부	2.6%	4.7%	2.2%
한국은행	2.7%	4.5%	2.1%
KDI	2.8%	4.2%	2.2%
평균	2.7%	4.5%	2.2%

○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093천명, 6.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3,437천명, 16.4%)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붙임1】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붙임2】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기준)

구분 (일자)	내 용
<p>최저임금 심의요청(3.31.)</p>	<p>○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p>
<p>제1차 전원회의(4.5.)</p>	<p>○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p>
<p>제1차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5.12.)</p>	<p>○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p>
<p>제2차 전원회의(5.17.)</p>	<p>○ 제1차 전문위원회(생계비·임금수준) 심사보고서 접수·보고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p>
<p>제2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6.9.)</p>	<p>○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 임금실태 등 분석</p>
<p>제3차 전원회의(6.9.)</p>	<p>○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하여 표결 없이 결정 - (의결주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p>
<p>제4차 전원회의(6.16.)</p>	<p>○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보고 ○ 위원 전원(27명)이 출석하여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안건은 부결 * 안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의결주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p>

구분 (일자)	내 용															
제5차 전원회의(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논의하지 못함 ○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를 완료하고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제6차 전원회의(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양측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386 712 1410 87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근로자위원</th> <th style="width: 40%;">사용자위원</th> </tr> </thead> <tbody> <tr> <td>최초제시안</td> <td>시간급 10,890원 (올해 대비 1,730원 인상, 18.9% 인상)</td> <td>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동결)</td> </tr> </tbody> </table>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10,890원 (올해 대비 1,730원 인상, 18.9% 인상)	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동결)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10,890원 (올해 대비 1,730원 인상, 18.9% 인상)	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동결)														
제7차 전원회의(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제2차 제시안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405 983 1410 114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근로자위원</th> <th style="width: 40%;">사용자위원</th> </tr> </thead> <tbody> <tr> <td>제2차 제시안 (제1차 수정안)</td> <td>시간급 10,340원 (올해 대비 1,180원 인상, 12.9% 인상)</td> <td>시간급 9,260원 (올해 대비 100원 인상, 1.1% 인상)</td> </tr> </tbody> </table>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제2차 제시안 (제1차 수정안)	시간급 10,340원 (올해 대비 1,180원 인상, 12.9% 인상)	시간급 9,260원 (올해 대비 100원 인상, 1.1% 인상)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제2차 제시안 (제1차 수정안)	시간급 10,340원 (올해 대비 1,180원 인상, 12.9% 인상)	시간급 9,260원 (올해 대비 100원 인상, 1.1% 인상)														
제8차 전원회의(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제3~4차 제시안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405 1245 1410 150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근로자위원</th> <th style="width: 40%;">사용자위원</th> </tr> </thead> <tbody> <tr> <td>제3차 제시안 (제2차 수정안)</td> <td>시간급 10,090원 (올해 대비 930원 인상, 10.1% 인상)</td> <td>시간급 9,310원 (올해 대비 150원 인상, 1.6% 인상)</td> </tr> <tr> <td>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td> <td>시간급 10,080원 (올해 대비 920원 인상, 10.0% 인상)</td> <td>시간급 9,330원 (올해 대비 170원 인상, 1.86% 인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table border="1" data-bbox="405 1594 1410 203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심의촉진구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한선</td> <td>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00원 인상(7.6% 인상) (제시근거) '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1,971,756원)에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하여 산출* * 2,060,485원(1,971,756원 * 1.045) / 209시간 ≒ 9,86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한선</td> <td>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50원 인상(2.7% 인상) (제시근거) '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1.8%) = 2.7%* *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 차이 보정</td> </tr> </tbody> </table>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제3차 제시안 (제2차 수정안)	시간급 10,090원 (올해 대비 930원 인상, 10.1% 인상)	시간급 9,310원 (올해 대비 150원 인상, 1.6% 인상)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	시간급 10,080원 (올해 대비 920원 인상, 10.0% 인상)	시간급 9,330원 (올해 대비 170원 인상, 1.86% 인상)	구분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00원 인상(7.6% 인상) (제시근거) '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1,971,756원)에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하여 산출* * 2,060,485원(1,971,756원 * 1.045) / 209시간 ≒ 9,860원	하한선	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50원 인상(2.7% 인상) (제시근거) '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1.8%) = 2.7%* *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 차이 보정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제3차 제시안 (제2차 수정안)	시간급 10,090원 (올해 대비 930원 인상, 10.1% 인상)	시간급 9,310원 (올해 대비 150원 인상, 1.6% 인상)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	시간급 10,080원 (올해 대비 920원 인상, 10.0% 인상)	시간급 9,330원 (올해 대비 170원 인상, 1.86% 인상)														
구분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00원 인상(7.6% 인상) (제시근거) '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1,971,756원)에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하여 산출* * 2,060,485원(1,971,756원 * 1.045) / 209시간 ≒ 9,860원															
하한선	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50원 인상(2.7% 인상) (제시근거) '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1.8%) = 2.7%* *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 차이 보정															

구분 (일자)	내 용				
	○ 노·사 양측 제시안 현황				
	(단위: 시간급, 원 / 전년 대비 인상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시안			
	2022년 최저임금액	최초 (6.23.)	제2차 (6.28.)	제3차 (6.29.)	제4차 (6.29.)
勞 측	9,160	10,890 (18.9%)	10,340 (12.9%)	10,090 (10.1%)	10,080 (10.0%)
使 측		9,160 (0%)	9,260 (1.1%)	9,310 (1.6%)	9,330 (1.86%)
	<p>-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공익 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p> <p>-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 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하여 퇴장</p>				
	<p>[공익위원 단일안 근거]</p> <p>'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p> <p>* 취업자증가율은 각 기관 '22년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를 '21년 취업자수(2,727.3만명, 통계청)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p>				
	<p>-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p> <p>*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여 기권으로 처리</p>				

* 연구위원회(1~6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 청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
 - 제1차(1.27.), 제2차(3.4.), 제3차(4.12.), 제4차(6.7.), 제5차(6.20.)

** 현장 의견 청취(4~5월): 최저임금 적용실태 및 인상 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업장 방문(3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실시

붙임2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 기준)

(단위: 원, %)

적 용 연 도	시간급	월 급 (209시간기준)	인 상 륜 (시간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23	9,620	2,010,580	5.0	460
'22	9,160	1,914,440	5.05	440
'21	8,720	1,822,480	1.5	130
'20	8,590	1,795,310	2.87	240
'19	8,350	1,745,150	10.9	820
'18	7,530	1,573,770	16.4	1,060
'17	6,470	1,352,230	7.3	440
'16	6,030	1,260,270	8.1	450
'15	5,580	-	7.1	370
'14	5,210	-	7.2	350
'13	4,860	-	6.1	280
'12	4,580	-	6.0	260
'11	4,320	-	5.1	210
'10	4,110	-	2.75	110
'09	4,000	-	6.1	230
'08	3,770	-	8.3	290
'07	3,480	-	12.3	380
'05. 9. ~ '06. 12.	3,100	-	9.2	260
'04. 9. ~ '05. 8.	2,840	-	13.1	330
'03. 9. ~ '04. 8.	2,510	-	10.3	235
'02. 9. ~ '03. 8.	2,275	-	8.3	175
'01. 9. ~ '02. 8.	2,100	-	12.6	235
'00. 9. ~ '01. 8.	1,865	-	16.6	265
'99. 9. ~ '00. 8.	1,600	-	4.9	75
'98. 9. ~ '99. 8.	1,525	-	2.7	40
'97. 9. ~ '98. 8.	1,485	-	6.1	85
'96. 9. ~ '97. 8.	1,400	-	9.8	125
'95. 9. ~ '96. 8.	1,275	-	8.97	105
'94. 9. ~ '95. 8.	1,170	-	7.8	85
'94. 1. ~ '94. 8.	1,085	-	7.96	80
'93	1,005	-	8.6	80
'92	925	-	12.8	105
'91	820	-	18.8	130
'90	690	-	15.0	90
'89	600	-	1그룹 29.7 2그룹 23.1	1그룹 137.5 2그룹 112.5
'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	-	-